
부패방지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

제 · 개정 일자 : 2026. 5. 26.

제 · 개정 번호 : 01

2025. 12. 1. 제 정

2026. 5. 26. 1차개정

남양유업 주식회사

부패방지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

(약칭 : 부패방지 CP규정)

[시행 2026.5.26.] [부패방지 CP규정 2026.5.26. 일부개정]

제1장 일반원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양유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을 위한 환경 조성, 부패리스크 매핑, 부패리스크 관리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회사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임직원은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해외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및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등 해당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부패방지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부패방지 CP”라 한다) 책임자는 이 기준의 준수를 위해 별도의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임직원 및 회사와 현재 또는 잠재적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는 이러한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 및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

②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국가의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전에 부패방지 CP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리경영이란 회사가 법적, 윤리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경영방식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부패방지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 및 활동을 말한다.
3. 부패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준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이를 준용한다.
 -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회사의 예산 사용, 회사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4. 부패리스크란 회사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사규 등을 위반하여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되는 상황 또는 부패 관련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중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5. 부패방지 방침이란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회사의 부패방지 의지 및 방향을 말한다.
6. 제3자란 계약·위탁 등의 관계에 따라 성립된 협력업체, 대리점 등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7. 부패리스크 매핑이란 회사 내 부패리스크를 전사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원인·영향력·발생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경감조치를 실행하고, 부패리스크맵을 구축·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위험신호(Red Flag)란 회사 내에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이미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활동 또는 상황·징후 등을 말한다.

제2장 환경조성

제5조 (리더십) ① 이사회는 부패방지 CP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부패방지 CP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임명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부패방지 CP 운영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③ 최고경영자는 윤리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부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부패방지 CP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실천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최고경영자는 책임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부패방지 CP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 최고경영자는 책임자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전담조직에 인력·재정적 지원과 정보 접근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최고경영자는 부패방지 CP의 지속적인 발전 및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최고경영자는 부패방지 CP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윤리경영 실천 의지 표명
2. 책임자의 직무수행 및 전담조직 운영과 관련한 독립성·공정성 보장
3. 부패방지 CP 정책 수립 및 준수
4. 윤리경영 문화 조성 및 촉진
5.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
6.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7. 부패방지 CP 관련 교육 및 대내·외 소통
8. 부패방지 CP 효과성 평가 및 개선
9. 윤리경영 공·과에 따른 징계 및 인센티브 부여
10. 기타 부패방지 C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책임자 및 전담조직) ① 책임자는 부패방지 CP 수행 및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최고경영자는 책임자의 직무상 권한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및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책임자는 윤리경영 담당 임원으로 준법상생팀이 소속된 최상위 부서의 장으로 함
 2. 책임자는 부패방지 CP 계획 수립·운영 및 전담조직 관리·감독을 위한 권한과 책임 보유
 3. 책임자는 부패방지 CP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4. 책임자는 부패방지 CP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음
 5. 책임자는 부패방지 CP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을 부여받음
 6. 책임자는 위 5호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 및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권한을 부여받음
 7. 책임자는 부패방지 CP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 부서 임직원에게 활용가능한 형태로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8. 책임자는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부패방지 CP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 가능
- ② 전담조직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인 준법상생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패리스크 매핑, CP 모니터링 및 개선, 교육 등을 통한 부패방지 문화 조성 등 부패리스크 전반적 관리를 위한 정책·절차 수립·시행
 2. 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부패방지 CP 규정 및 기준의 수립과 대내·외 공표
 3. 위험신호 포착 시 대응방안 마련·시행, 책임자에 보고, 부패방지 CP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
 4. 글로벌 부패리스크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 책무 수행
- ③ 전담조직의 사원은 입사 2년 이상자로서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로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전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담조직의 사원으로 보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타 책임자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 ⑤ 전담조직 사원의 보직 및 전보는 책임자의 요청에 의한다.
- ⑥ 전담조직 사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동 사원의 인사 및 보직 변경 시 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⑦ 책임자는 효율적인 부패방지 CP 운영을 위해 조직 단위별 또는 업무 단위별 별도의 부패방지 CP 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법통제기준의 준법지원실전담담당자로 한다.

- 제7조 (정책·절차)** ① 회사는 부패방지 CP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부패방지 CP 정책을 수립할 때 임직원, 제3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소통하여야 한다.
- ③ 부패방지 CP를 위한 정책 및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윤리경영 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 CP 운영체계 및 운영절차
 2. 임직원 및 제3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 및 접근의 용이성
 3. 부패리스크 식별·평가·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부패방지 CP 효과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 CP 관련 제재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6. 기타 윤리경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회사는 부패방지 CP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부패방지 CP를 위해 윤리강령 및 행위규범 등 이에 준하는 준법 윤리 사내 규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 확산) 회사는 윤리경영을 위하여 임직원, 제3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바람직한 부패방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리스크 매핑

- 제9조 (역할 및 책임)** ① 최고경영자는 부패리스크 식별·평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매핑이 적절히 실행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 ② 모든 부서는 부패리스크를 식별·평가·경감하고 그 결과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관리자는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전담조직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부패리스크맵을 구축·관리하고,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임직원은 비윤리 또는 부패행위의 발생사실을 인지하거나, 부패리스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전담조직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 ① 각 부서는 조직의 규모·기능·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패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경감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각 부서의 리스크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회사의 리스크 우선순위를 정기적으로(연 1회) 검토하여야 한다.

- ③ 각 부서는 리스크 평가 및 경감조치 후에도 남아 있는 잔여리스크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부패리스크 식별 평가를 위한 세부 운영규정은 “부패방지 CP 리스크평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1조 (부패리스크맵 구축 및 관리) ①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식별·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부패리스크맵을 구축·관리한다.

- ② 부패리스크맵에는 식별된 모든 부패리스크에 대한 위험수준, 경감조치, 잔여리스크 및 조치, 조치계획의 책임자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부패리스크맵에 따른 조치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부패리스크 매핑 보고 및 공개)

- ①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매핑결과를 최고경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리스크 매핑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부패리스크 관리

제13조 (위험신호 및 부패리스크 관리) ① 전담조직과 부패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부서는 부패 위험신호를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3자의 부패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CP 운영기준 등을 공유하고, 제3자의 부패리스크를 식별·평가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3자 부패리스크 매핑을 통해 파악된 부패리스크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고위험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제3자 관련 위험신호를 포착한 경우 즉시 전담조직에 알려야 하며,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위험수준을 검토하여 조사 또는 감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① 회사는 윤리경영과 관련한 일반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부패리스크가 높은 부서, 사업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부패리스크 매핑결과 및 과거 위반사례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전담조직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전담조직은 윤리경영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 ⑤ 부패방지 교육을 위한 세부 운영규정은 “부패방지 CP 교육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5조 (신고 처리 및 보호·보상) ① 회사는 윤리경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에 우호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절차에 따라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 제3자 및 일반 국민이 신고절차, 신고자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채널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누구나 쉽게 신고채널에 접근할 수 있을 것
2.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기준·절차
3. 신고자에 대한 전보,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4.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

③ 회사는 부패·공익 신고 등을 통해 재산상 이익 발생, 손실 방지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합당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항은 “제보처리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6조 (조사) ① 회사는 부패방지 CP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예방을 위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신호 발생 또는 부패방지 CP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부패방지 CP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감사는 “준법통제기준” 및 “내부감사 규정”에 따른다.

④ 전담조직은 조사 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패취약 분야, 취약점, 발생요인 등을 파악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담조직은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를 최고경영자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내·외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모니터링 및 개선

제17조 (효과성 평가 및 개선) ① 회사는 부패방지 CP 효과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성 평가를 정기적으로(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은 효과성 평가를 통해 부패방지 CP 운영 성과와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조직은 효과성 평가 및 개선결과를 최고경영에 보고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할 수 있다.

④ 효과성 평가를 위한 세부 운영규정은 “부패방지 CP 효과성평가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18조 (문서화 및 기록관리) ① 회사는 각종 거래, 계약, 부패리스크 매핑 등과 관련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문서화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사실이 아니거나 위조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기록물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규정은 “부패방지 CP 문서관리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6장 제재 및 인센티브

- 제19조 (제재 및 인센티브)** ① 회사는 부패방지 CP 정착을 위한 제재 및 인센티브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부패 등 윤리경영 위반행위와 비례하여 징계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기준에 맞추어 공정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윤리경영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경우 유공에 따른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제재 및 인센티브 세부 운영규정은 부패방지 CP규정 별첨 “제재 및 인센티브”에서 정한다.

제7장 기 타

- 제20조 (규정의 운영)** ① 최고경영자는 이 규정을 제·개정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부패방지 CP 책임자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책임자는 이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부패방지 CP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책임자는 관련 법령개정 및 회사의 업무환경 변화를 연 1회 검토하고, 검토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부패방지 CP규정 및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개정한다.

제21조 (공개) 회사는 부패방지 CP 대내외 소통 및 활동내역을 지속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부패 예방과 투명한 부패방지 CP 운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2026. 1. 1.부터 시행한다.
2. 2026년 5월 26일부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